

세계 ARDF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세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세계 ARDF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칭한다.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 적) 위원회는 세계 ARDF 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아마추어무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소재지) 위원회는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회관 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 업)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재원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 등
- ②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홍보 및 관찰, 기술적 점검, 자원봉사자 선발 교육 등
- ③ 기타 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 등

제 5 조 (조 직) 위원회는 위원장1인, 부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본부장, 위원, 고문, 자문위원, 명예위원장, 명예대회장 등을 둘 수 있다.

- ① 위원장 :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② 부위원장, 본부장, 위원, 고문, 자문위원, 명예위원장, 명예대회장 :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간사 : 연맹의 유급 직원으로 본 대회를 마칠 때 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한다.

제 6 조 (직 무)

- ① 위원장은 세계 ARDF 선수권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 및 결위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본부장, 위원은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한다.

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세계 ARDF 선수권대회를 위한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자문활동을 한다.

⑤ 명예위원장과 명예대회장은 본 대회가 성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에 적극 협조하며 활동한다.

⑥ 간사는 본 대회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마칠 때 까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정리 및 회계업무를 기록 정리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본 부)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본부, 기술본부, 경기본부, 행사본부, 홍보본부, 지원본부, 사무국을 두며,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본부를 둘 수 있다.

- ① 기획본부 : 종합기획조정, 개최지역 선정, 자원봉사자 선발 및 교육, 후원기관 및 업체 섭외, 대외협력
- ② 기술본부 : 경기장 선정, 지도제작, 장비관리 등
- ③ 경기본부 : 국제심판 확보 및 관리, 성적집계 등 경기 운영
- ④ 행사본부 : 개폐회식, 시상, 선수촌 관리, 부대행사 등
- ⑤ 홍보본부 : 각종 홍보물 제작, 웹사이트 운영, 대회 사진 및 동영상 기록 등
- ⑥ 지원본부 : 자산관리, 재무, 회계, 백서 및 화보집 발간, 일반 업무지원 등
- ⑦ 사 무 국 : 국제업무, 각종 문서 수.발신 및 정리, 일반 서무 등

제 8 조 (임 기) 위원장, 부위원장, 본부장, 위원, 고문, 자문위원의 임기는 대회개최년도 12월 말일 까지로 한다.

제 2 장 위원회의 및 활동

제 9 조 (운영회의)

- ① 본 대회를 위한 업무 및 대회준비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회의를 개최한다.
- ② 운영회의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, 본부장, 위원, 고문, 자문위원으로 한다.
- ③ 운영회의의 성원은 위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으로 하며, 의결은 참석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.
- ④ 위원은 운영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, 3회 이상 불참 시에는 그 직을 해임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재정 및 회계

제 10 조 (재 정)

- ①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연맹에서 지원하는 지원금, 정부지원금, 기타로 충당한다.
- ② 예산 및 결산은 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회계연도는 특별회계로 한다.

제 11 조 (보 수) 위원장, 부위원장, 본부장, 위원, 고문 및 자문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하며, 조직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제 12 조 (회계 관리원칙)

- ① 위원회 회계는 활동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보장하고 대회조직위원회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.
- ② 재정은 위원장이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13 조 (장부 등의 비치)

- ① 위원회의 관리책임자는 경비 지급에 따르는 각종 장부, 통장 기타 지출 관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연맹사무국으로 이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기록유지)

- ① 위원장은 분야별 활동결과와 현황, 실적 및 업적을

기록 유지한다.

- ② 본 세칙에 없는 특별한 제반 업무에 관하여는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한다.

부 칙

- ① 이 세칙은 2019년 4월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.